

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제정 2003. 10. 1. 개정 2013. 4. 1.
개정 2016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에 의한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경대학교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대경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.)이라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상시 자인면 단북1길 65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4 조 (산학협력단의 업무)<개정 2016.3.1.>

① <삭제 2016.3.1.>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<개정 2016.3.1.>
2.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 관리 <개정 2016.3.1.>
3. 산학일체형 CO-OP 교육과정 개발·운영
4. <삭제 2016.3.1.>
5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6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7.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8. 정부·단체 및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발굴과 과제수행 <신설 2016.3.1.>
9. 대학시설 및 기타 자원의 산업화·수익화 사업 <신설 2016.3.1.>
10. 대학의 교지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<신설 2016.3.1.>
11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<신설 2016.3.1.>

제 5 조 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 <삭제 2016.3.1.>

1. <삭제 2016.3.1.>
2. <삭제 2016.3.1.>
3. <삭제 2016.3.1.>
4. <삭제 2016.3.1.>

제 2 장 조 직

제 6 조 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 1인의 이사를 둔다.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 7 조 (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겸임하게 하거나 임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.
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괄한다.

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 8 조 (조직)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제 9 조 (행정사무)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행정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행정지원팀에는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
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,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 11 조 (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·반영 및 보상금 지급)<개정 2016.3.1.> ① 총장은 교직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당해 교직원의 평가·승진·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·반영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②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학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제 3 장 재산 및 회계

제 12 조 (수입)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<개정 2016.3.1.>
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<개정 2016.3.1.>
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<개정 2016.3.1.>
5. 학교기업의 운영수입금 <개정 2016.3.1.>
6. 차입금 및 이자수입 등의 수입금 <신설 2016.3.1.>
7.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<신설 2016.3.1.>

② <삭제 2016.3.1.>

제 12 조의 1 (기본재산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대경대학교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. <신설 2016.3.1.>

1. 출연재산 <신설 2016.3.1.>
2.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증여재산 <신설 2016.3.1.>
3.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 <신설 2016.3.1.>

제 13 조 (지출)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
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<개정 2016.3.1.>
3. 대학의 시설·운영 지원비
4. 채용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<개정 2016.3.1.>
5. 학교기업의 운영비 <개정 2016.3.1.>
6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<신설 2016.3.1.>
7.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<신설 2016.3.1.>

제 14 조 (재산관리의 제한)<개정 2016.3.1.> ①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 <신설 2016.3.1.>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 <신설 2016.3.1.>
3. 채권의 포기 <신설 2016.3.1.>
4. 기타 재산관리의 관리 및 처분 <신설 2016.3.1.>

② <삭제 2016.3.1.>

제 15 조 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16 조 (회계관리) <개정 2016.3.1.>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 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① <삭제 2016.3.1.>

② <삭제 2016.3.1.>

③ <삭제 2016.3.1.>

④ <삭제 2016.3.1.>

제 17 조 (예·결산)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관계법령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① <삭제 2016.3.1.>

② <삭제 2016.3.1.>

③ <삭제 2016.3.1.>

제 18 조 (학교기업)<개정 2016.3.1.>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선·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(이하 "학교기업"이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,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경대학교 학교기업 운영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 4 장 보 칙

제 19 조 (비밀유지 의무)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20 조 (정관의 변경)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 21 조 (해산)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 <개정 2016.3.1.>

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. <개정 2016.3.1.>

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.

④ <삭제 2016.3.1.>

제 22 조 (공고방법)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경대학교 학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1.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<개정 2016.3.1.>

2.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6.3.1.>

3. <삭제 2016.3.1.>

② <삭제 2016.3.1.>

제 5 장 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정관의 효력 발생시기는 2003년 10월 1일로 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, 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- ① (시행일) 본 개정정관의 효력 발생시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① (시행일) 본 개정정관의 효력 발생시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. 보상금 지급기준

아래의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**총장**이 지급액을 결정한다.

- ①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: 간접관리비 10%
- ② 국책사업의 보조금 유치 : 총액의 0.5%
- ③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: 실비
-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: 실비